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장 창 훈

(환경부 소음진동과)

## 1. 머리말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으나 원치않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양상도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책임있는 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이러한 환경분쟁이 주로 環境汚染 被害紛爭調整法에 의한 調整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63%에 달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소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과거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양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배상을 구하는 방식,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배상을 구하는 방식과 사법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배상을 구하는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는 원인과 내용이 복잡 다양할 뿐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 접촉이나 민원처리방식으로는 분쟁의 해결이 곤란하여 주로 소송에 의한 해결을 추구했으나, 소송제도는 피해를 주장하는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

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적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평타당하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環境汚染 被害紛爭調整制度가 출범하게 되었다.

## 3. 환경오염 피해분쟁의 특성

-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해자가 다수일 때에는 책임분담이 불명확하고 가해자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 환경오염피해는 인체건강, 생활환경, 동·식물 등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그 양태도 다양하다.
- 피해자의 청구가 손해배상외에 서비스에 관한 것, 조업에 관한 것등 유지청구에 관한사항이 포함되며 그 범위가 광범하다.
- 생태계등 자연환경자체가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 4.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특성

- 환경오염피해는 증거의 확보나 오염현상의 재현이 불가능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한다.
- 환경오염피해는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준의 준

수만으로는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法第2條, 第4條, 第10條)

환경분쟁조정기관으로는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와 地方環境紛爭調整委員會가 있어 환경부에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를 두며, 중앙위원회는 임기 3년인 위원장 1인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장관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사무국에는 국장, 서무과장과 5인의 심사관이 있다. 시·도에 있는 地方環境紛爭調整委員會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담당직원이 있다.

## 6.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종류 및 효과

### 가. 알선(斡旋)

#### - 알선의 의의

알선이란, 환경오염피해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와주고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알선위원이 중개(仲介)하는 제도이다.

### 나. 조정(調停)

#### - 調停의 의의

조정이란, 調停위원회가 분쟁사건에 관하여 법정절차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調停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 調停委員會의 구성(法第21條, 施行令第18條)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7일이내에 중앙 또는 지방환경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경미한 사건은 1인)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한다.

#### - 調停의 성립 및 그 효력(法第23條, 施行令第21條)

조정위원회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개별적 면담을 통하여 당사자간 의견차를 좁힌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30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하고, 기간내에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調停의 중단(法第26條)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중단할 수 있으며, 조정안 수락권고후 지정기간내에 수락거부의 통지가 있으면 조정은 중단된다. 조정이 중단되면 조정위원회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재정(裁定)

#### - 재정의 의의

재정이란, 대립되는 당사자간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재정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 재정위원회의 구성(法第28條, 施行令第18條 및 第22條)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7일이내에 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건마다 5인(청구액 1억원이하인 경미한 사건은 3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한다.

#### - 재정의 효력(法第40條)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사건에 관한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해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직권조정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분쟁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지방환경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7. 환경분쟁조정의 처리절차

### 가. 분쟁調整의 신청 및 취하

- 알선과 調停의 신청(法第3條, 第15條)  
환경오염피해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관할지방환경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개 시·도이상에 관련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알선과 조정은 중앙환경위원회에 신청한다.
- 재정의 신청(法第3條, 第16條)  
환경오염피해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당사는 중앙환경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알선 또는 조정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가(法第17條)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이 調停 또는 재정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調停의 거부(法第25條)  
調停委員會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調停거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재정의 각하(法第34條)  
재정위원회는 재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흄을 바로잡을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신청의 취하

알선, 調停 또는 재정의 신청인이나 참가인은 당해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나. 절차의 비공개(法第27條, 第38條)

- 調停위원회가 행하는 調停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8. 맷 음 말

환경분쟁전종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은 건설기술자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발파공사등 진동발생이 불가피한 공사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단순한 고능률과 저비용의 추구는 강한 소음·진동의 발생이 따르고 인접지역에 각종 피해를 유발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해야하며 피해가 불가피할 때에는 공사전·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종 특정 및 조사를 병행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발생시 정확한 인과관계 검토로 적정한 피해액 산정 및 배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 (3)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사례집
- (4)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